

오산세교 우미 린 센트럴시티 |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4년 11월 7일(목) ~ 11월 12일(화) ※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제출 방법	건본주택 방문 접수
건본주택 위치	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734-3 (대표번호 : 031-957-1600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건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당첨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서류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발급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)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일반(기관추천) 특별공급 제외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용도 : 서류접수 및 계약용)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	배우자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년/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(군복무기간 명시)
	○		단신부임 입증 서류 (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)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·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○	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	세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·비속이 있는 경우 단신부임의 경우,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 체류여부 확인(동반 체류 시 단신부임 인정 불가)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	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	○	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: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직계비속: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비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(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 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"소형·저가주택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서류
대리인 제출시 (추가 서류)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
	○		위임장	본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건본주택에 비치
	○		대리인 신분증, 도장	대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

※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(2024.10.18.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※ 상기 서류 및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